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북 여성재단 출연 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북여성재단출연계획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465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10. 14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-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7일

-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변혜정 여성정책관)

가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명 칭 : 충북여성재단
- 이 사 회 : 이사 15명 이하(이사장 : 도지사), 감사 2명
- 사 무 처 : 12명(사무처장, 2팀 1센터) * 대표이사(비상근)
 -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내 사무 공간 활용

- 출연계획 : 1,135백만원
 - 기본재산 : 100백만원
 - 사무환경 조성 : 100백만원
 - 운영재원(매년) : 935백만원('17년 기준 추정액)

- '17년 당초 : 200백만원(기본재산, 사무환경 조성 등)
- '17년 추경 : 935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
- * 운영재원은 추경에 여성발전센터 예산 삭감·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

- 주요기능
 -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연구·개발 사업
 -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
 - 여성의 문화 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 - 양성평등,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 -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○ 법적 근거 및 계획안 내용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,
-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) 및 같은 법 제20조(재정지원),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」 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및 같은 법 제8조(재정지원 등)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, 출연계획안의 법적 절차는 적정함

○ 검토결과

-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, 자율성·다양성·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도로 일·가정 양립정책 등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개발을 지원하며,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충청북도가 여성재단에 대하여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동 재단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나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출연금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,
- 충북여성재단이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양성평등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여성정책연구 및 충청북도의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(Think tank)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, 충북여성재단 출연을 위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보임.
- 다만,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북 여성재단 출연계획안」 1부.

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46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9. 27.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개요

- 명칭 : 충북여성재단
- 이사회 : 이사 15명 이하(이사장 : 도지사), 감사 2명
- 사무처 : 12명(사무처장, 2팀 1센터) * 대표이사(비상근)
 -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내 사무 공간 활용
- 출연계획 : 1,135백만원
 - 기본재산 : 100백만원
 - 사무환경 조성 : 100백만원
 - 운영재원(매년) : 935백만원('17년 기준 추정액)

- '17년 당초 : 200백만원(기본재산, 사무환경 조성 등)
- '17년 추경 : 935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
- * 운영재원은 추경에 여성발전센터 예산 삭감·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

○ 주요기능

-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연구·개발 사업
-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
- 여성의 문화 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- 양성평등,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-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3. 재단 설립 추진상황

□ 그간 추진현황

- 민선6기 공약사업 선정 '14. 7월
- 벤치마킹, 사례·자료조사 및 검토 '14. 7월 ~ '15. 9월
- 타당성 검토(충북연구원) '15. 12월 ~ '16. 4월
-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'16. 4. 29
- 행정자치부 협의(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) '16. 7. 12

구 분	주요 내용
협의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- 시·도지사가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
행정자치부의 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성 정책연구 기능,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고,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하여 추진하는 민간이양 사업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됨 · 다만, 신규로 재단 설립 시 재단 본연의 여성관련 사업 인력보다 행정지원 인력의 증원이 (향후)불가피하고, 효율적인 조직·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할 때, 지방연구원과 통합 운영하는 타 시·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검토와 보완 필요

□ 향후 계획

- 조례안, 출연 계획안 도의회 심의 '16. 10월
- '17년도 예산안 도의회 심의 '16. 11월 ~ 12월
- 발기인 대회, 창립 총회 '16. 12월
 - 설립취지문 채택, 정관안 발의 및 임원선임안 심의·의결 등
-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'16. 12월
- 직원 채용(대표이사, 사무처장, 직원) '17. 1월 ~ 2월
- 재단 출범 '17. 3월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여성정책관실 성주류화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변혜정	장기봉	임영택	220-3922

기관명	충북여성재단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충북여성재단 기본재산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환경조성, 사업비 및 운영비	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 예정금액 : 1,135,000천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백만원)</div>								
	구분	사업기간	2016년 예산액	2017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	기본재산	설립일~연간		100	100		100		
사무환경 조성	설립일~연간		100	100		100			
사업비 및 운영비	설립일~연간		935	935		935			
* 사업비 및 운영비는 기본재산 확보 후 '17년 추경예산에 여성발전센터 연구 및 교육관련 예산 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					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여성재단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사업비·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								
근거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								
	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 1. 문화, 예술, 장학(將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성·다양성·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도의 여성정책 추진, 지역형 정책개발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, 공모·용역사업 참여 등의 장점을 가진 충북여성재단 설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사·중복되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축소·폐지하면서 효율적인 조직·인력·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히, 도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단 설립 시 최초 출연되는 기본재산 1억원 및 사무환경조성비 1억원을 제외한 운영재원은 기존의 여성발전센터에 지원되던 예산을 조정하여 출연할 계획임								
첨부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자·출연사업계획서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
 - 설립 후 매년 1회 경영평가 실시 예정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 - 설립 후 사업년도 종료 후 매년 추진현황과 실적평가 실시

2 출연금 예산 요구부서 검토의견

- 출연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
 - 민간 주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설립에 필요한 도비 출연
 - 기본재산 : 안정적 재정운영 및 공모사업 참여 등을 위한 기본재산 필요
 - 사무환경 조성 : 재단 사무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 계상
 - 사업비·운영비 : 여성발전센터의 연구,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, 업무 이관 후 출연금액 재 산정하여 추경에 편성
- 향후 출연금 목적 달성 여부 지속 점검
 -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, 결산 심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5년 결산액	2016년 예산액(최종) (C)	2017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부서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기본재산				100		신규 출연
사무환경 조성				100		신규 출연
사업비 및 운영비				935		기본재산 확보 후 출연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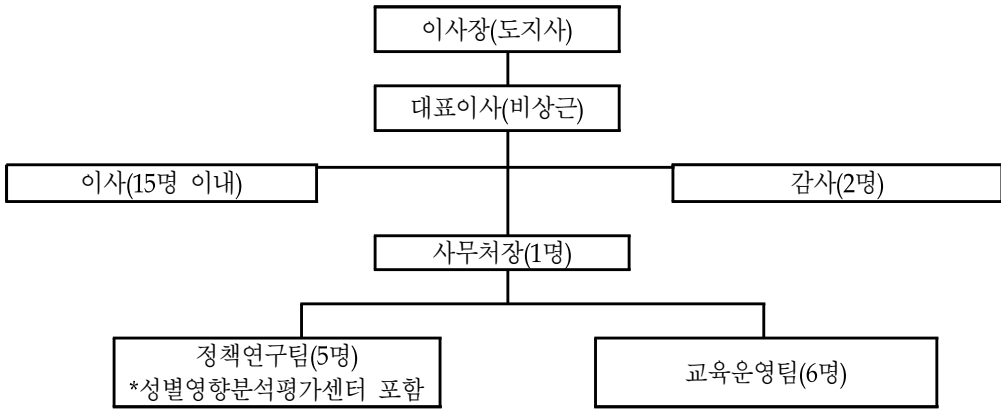
* 사업비 및 운영비는 기본재산 확보 후 '17년 추경예산에 여성발전센터 연구 및 교육관련 예산 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계획임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(체크항목)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여	여	부	여	여	여	여	

1-2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여성재단

설립근거	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			전화번호 : 설립 전			
주요연혁	- 설립 전		기관형태	홈페이지 : 설립 전			
인원현황	계	정규직		출연기관(재단법인)			
	12명 예정	12명 예정(사무처)		비정규직 -			
임원구성(안)	구분	인원	임기	선임방법	비고		
	이 사 회	15명 이내	2년	· 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15명 이내 ·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회 구성 · 결원 시 충원된 이사는 잔여임기 수행			
	이 사 장	1명	-	· (당연직) 도지사			
	대표이사 (비상근)	1명	2년	· 임명방법, 임기 등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름			
	감 사	2명	2년	· 임명방법, 임기 등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름			
	사 무 처	12명	-	· 공개채용 원칙(이사회 의결에 따라 근무 인원 및 채용방법 최종 결정)			
조직구성(안)	 <pre> graph TD A[이사장(도지사)] --> B[대표이사(비상근)] B --- C[이사(15명 이내)] B --- D[감사(2명)] B --> E[사무처장(1명)] E --> F[정책연구팀(5명) *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포함] E --> G[교육운영팀(6명)] </pre>						
주요기능	- 여성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사업,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-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-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4	2015	2016	재무현황 (백만원)	자산	-
	예산액	-	-	-		부채	-
	지자체 지원액	-	-	-		자본	-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-			-		-	

1-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여성정책관실		출연	1,135,0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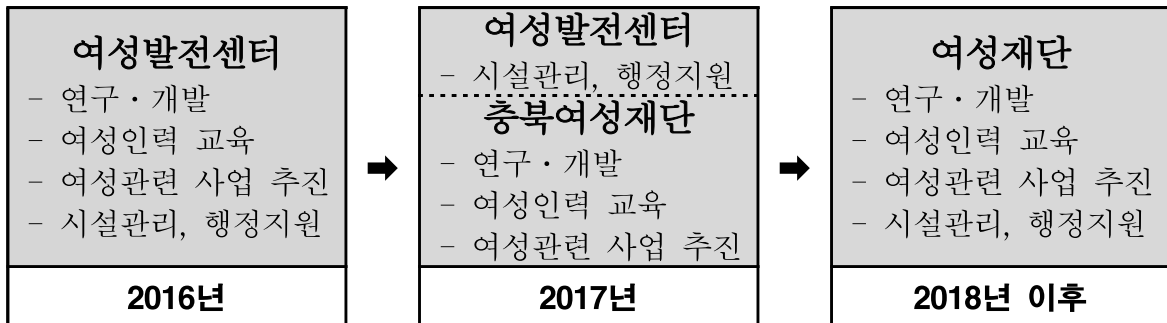
- 정책참여욕구 증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
- 자율성·다양성·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직 체계 마련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·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(허브)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
- 사업기간 : 설립일 ~ 해산시 까지
- 출연금액 : 1,135백만원
 - 기본재산 : 100백만원
 - 사무환경 조성 : 100백만원
 - 운영재원 : 935백만원('17년 기준 추정액)

□ 여성조직 역할 분담

- 효율적, 안정적 재단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재단 확대
 - 기능 중복되는 여성발전센터 역할 축소·폐지, 재단으로 일원화
- 여성조직 역할 분담



□ 산출기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내 역	비 고
합 계	1,135		
기본재산	100	- 100,00천원 × 1회 = 100,000천원	
사무환경	100	- 홈페이지 구축 = 30,000천원 -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= 50,000천원 - 사무용 집기구입 등 = 20,000천원	
운영재원	935		
인건비	469	- 사무처 직원 12명 (기본급 및 수당, 법정충당금 등 포함)	
운영비	106	-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 등	
사업비	360	- 여성정책조사연구, 양성평등관련 사업, 여성인력개발 교육 등	

○ 연도별 출연 예상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도비 출연금	5,046	1,135	952	969	986	1,004

□ 기대효과

- 민간 참여형 여성정책 추진으로 다양화, 세분화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공공부문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창의적 신규사업 발굴, 공모 및 용역사업 참여 등 자체 수익사업 발굴 확대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여성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 교육,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관련 부문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
 - 전국 시도 중 충북에서만 사업소에서 여성정책 연구개발
 - 16개 시도(세종시 제외) : 재단 13개, 지방연구원 2개, 도 사업소 1(충북)
-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여성단체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재단 미 승인시 재검토 및 재단설립 요구 예상